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II)

-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중심으로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 행정사무관 | 전 재 원



I. 머리말

자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 계산시 중요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요건 판정,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중심으로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해설하고자 한다.

II.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일로 본다.

- (1)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2)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한 날이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3)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이 대금청산일이 되고,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결재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
-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청산한 후 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3.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첫회 부분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장기할부조건부매매시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첫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분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 둘째, 2회 이상(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수입 하는 것을 의미함)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수입할 것, 셋째,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다만, 2000년 4월 2일 이전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분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분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계약당시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금지급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거래가 아니다.
- (2) 첫회부분금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 (3) ‘첫회부분금지급일’이란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분금을 의미하므로 첫회와 2회 부분금을 연체하고 3차 부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3차 부분금을 첫회 부분금으로 본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5.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유증과 사인증여 포함)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등기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한다.

- (1)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 시기이며,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6. 점유로 취득(시효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登記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민법 §245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7.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 (1)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 이 취득시기이다.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 (2)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8.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이 되는 것이다.

9.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열거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선입선출법)으로 본다.

10. 교환의 경우

교환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고,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청산한 날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11.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13.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 ① 협의성립,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다.
- ②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 확정일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14.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15. 대물변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6.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한 날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17. 용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시 잔금청산일

용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용자를 함으로써 그 용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18.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과 다른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이 경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19.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봄)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1. 조건부 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2.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23.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24.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

일이 된다.

25. 법원판결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토지매매인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26. 대물변제시 양도시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이다.

27. 동일한 날에 2주택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할 주택(1세대 3주택이상 중과 등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준용)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154⑨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취득시기의 의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Ⅲ.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가.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날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한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부동산의 경우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도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②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2) 예정신고서 자진납부할 세액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text{산식}] \text{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 = \text{예정신고산출세액} - \text{감면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text{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고지된 세액}) - \text{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text{납부할 세액의 10\%})$$

2. 확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라고 한다. 2000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바뀌어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가. 확정신고 · 납부기한

(1) 일반적인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5월 31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이 신고 · 납부기한이다.

- (4) 금융기관의 토요일무일에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나. 확정신고의무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회 이후 양도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2000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라.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

출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부동산의 경우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도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마.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추가부담 등 불이익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시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부당한 방법 : 허위의 증빙, 허위문서의 작성 등

(2) 분납혜택 배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혜택을 받지 못한다.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배제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가.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추가자진납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로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2)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경감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여 감면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기타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경정 등의 청구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④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⑤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⑥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⑦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